

# 2016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·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1273
----------	------------

2016년 6월 24일  
예산결산특별위원회

## 1. 수정 이유

「2016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·세출 추가경정예산안」에 대하여,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.

## 2. 수정 주요 내용

「2016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·세출 추가경정예산안」에 대하여 별첨의 수정조서와 같이 수정·의결한다.

◇ 첨 부 : 2016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 
세입·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조서 1부. 끝.

# 2016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·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조서

## □ 총규모

(단위 : 천원)

구분	추경예산안	의결내역	증감액
세입	8,132,962,720	8,132,962,720	0
세출	8,132,963,720	8,132,962,720	0

## □ 세출 증·감액 내역

(단위 : 천원)

구분	세부사업명	세부항목1	추경예산안	증감액	수정의결내역
감액	누리과정지원	만3~5세아 유아학비	232,525,824	△79,921,979	152,603,845
증액	누리과정지원	만3~5세아 보육료	151,274,736	79,921,979	231,196,715
<b>계</b>			383,800,560	0	383,800,560

## □ 예산총칙

원 안	수 정 안
제1조 2016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·세출 예산총액은 세입·세출 각각 <u>8,132,963,000천원</u> 으로 한다. (현행과 같음)	제1조 2016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·세출 예산총액은 세입·세출 각각 <u>8,132,962,720천원</u> 으로 한다. (원안과 같음)
제8조 다음의 경비에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상호 이용할 수 있다. 1. ~ 6. (현행과 같음) <u>7. 누리과정지원</u>	제8조 다음의 경비에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상호 이용할 수 있다. 1. ~ 6. (원안과 같음) <u>&lt;삭 제&gt;</u>